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94
----------	-------

발의연월일 : 2018. 12. 6.

발의자 : 김삼화 · 이찬열 · 권은희
황주홍 · 이용주 · 김중로
김수민 · 신용현 · 채이배
이용호 · 김관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공공기관에 시정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도 행하여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차별적 관행의 시정 대상에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도 포함하고,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등이 시정요청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기관이”를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은”을 “공공기관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그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u>공공기관</u>의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u>공공기관</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u>(이하 “<u>공공기관등</u>”이라 한다)가-----</p> <p>-----.</p> <p>② -----<u>공공기관등은</u>-----</p> <p>---.</p>
<p>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u>공공기관</u>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u>공공기관등</u>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④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u>공공기관등</u>은 그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u>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u> 통지하여야 한다.</p>
<p><신 설></p>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및 제4항에 따라 시
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